

2026학년도 제1차

규정심의위원회

2026. 3. 5.(목)



회의 개요 및 안건

- ◎ 일 시: 2026. 3. 5.(목), 오후 3시
- ◎ 장 소: 기획팀 회의실(문화관 204호)
- ◎ 안 건

연번		안건	입안부서	배석	예상시간
1	심의	「대학원 학칙」 개정 건	교학팀	교학팀장	'30
2	심의	「AI혁신추진위원회규정」 개정 건	기획팀	기획처장 기획팀장	'20

◎ 추후 일정

심의기구(순)	비고
교무위원회	- 2026. 3. 10.(화)
대학평의원회	- 학칙 해당(일정 미정)
법인이사회	- 2026. 3월 말(직제, 인사, 보수에 관련한 규정 해당)

※ 학칙 및 직제규정: 입안예고공청회 3일 이상 의견조회 시행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학팀		관련부서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 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교육대학원 6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6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입학정원(49명) 조정 및 재배정 • 전문간호사과정 정원 명시 • 외국인전담학과 학칙 반영 및 명시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2026.02.14.)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 【별표 1】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 6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결과 반영 - 감축 인원: 15명 - 입학정원 조정 <table><tr><th colspan="2">조정대학원</th><th rowspan="2">캠퍼스</th><th rowspan="2">과정</th><th rowspan="2">배정 인원</th><th rowspan="2">기존 인원</th><th rowspan="2">최종 인원</th></tr><tr><th>FROM</th><th>TO</th></tr><tr><td rowspan="4">교육대학원 (-15명)</td><td rowspan="4">일반대학원 (+15명)</td><td rowspan="2">전주</td><td>석사</td><td>7</td><td>88</td><td>95</td></tr><tr><td>박사</td><td>2</td><td>43</td><td>45</td></tr><tr><td rowspan="2">진천</td><td>석사</td><td>3</td><td>10</td><td>13</td></tr><tr><td>박사</td><td>3</td><td>3</td><td>6</td></tr><tr><td colspan="2"></td><td>계</td><td></td><td>15</td><td>144</td><td>159</td></tr></table> ※ 총정원(269명)은 변동 없음 • 일반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의 입학정원(20명) 명시 • 외국인전담학과(진천캠퍼스 예술학과) 학칙 반영 및 명시							조정대학원		캠퍼스	과정	배정 인원	기존 인원	최종 인원	FROM	TO	교육대학원 (-15명)	일반대학원 (+15명)	전주	석사	7	88	95	박사	2	43	45	진천	석사	3	10	13	박사	3	3	6			계		15	144	159
조정대학원		캠퍼스	과정	배정 인원	기존 인원	최종 인원																																					
FROM	TO																																										
교육대학원 (-15명)	일반대학원 (+15명)	전주	석사	7	88	95																																					
			박사	2	43	45																																					
		진천	석사	3	10	13																																					
			박사	3	3	6																																					
		계		15	144	159																																					
기대효과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입안예고 공청회			전자공청회																																							
	• 일시: 2026. 2. 12.(목), 오전 10시 • 장소: 기획팀 회의실(문화관 204호) • 참석대상: 우석대학교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 • 참석인원: 18명[기획처장 외] / 특이사항없음			• 2026. 2. 10.(목) ~ 2. 12(목), 12:00(정오)까지 (교내 포털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 의견 없음																																							
첨부자료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2024.5.30., 2024.10.28., 2024.12.26., 2025.01.21., 2025.2.27., 2025.4.29., 2025.5.30., 2025.6.26., 2025.8.25., 2025.11.13.)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변경 2002.2.15., 2004.1.15) 1. 교육부장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0.3.3.)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학 제 (2006.8.4.) 5.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25.6.26.) <u><항 신설></u>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2024.5.30., 2024.10.28., 2024.12.26., 2025.01.21., 2025.2.27., 2025.4.29., 2025.5.30., 2025.6.26., 2025.8.25., 2025.11.13.) ② (현행과 같음) <u>③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은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전담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u>

현 행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인문 사회	교 육 학 과	88명	교 육 학 과	43명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글로벌경영학과		-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학특성학과		교육학특성학과	
	심 리 학 과		심 리 학 과	
	-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과	
	사회경제·경영학과		사회경제·경영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		-	
	예술경영학과		-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관광문화경영학과		관광문화경영학과	
자연 과학	약 학 과	88명	약 학 과	43명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 약 학 과		한 약 학 과	
	-		-	
	간호학(간호사)학과		-	
	간호학(간호사)학과		-	
공학	물리치료학과	88명	-	43명
	전기전자공학과		-	
	동아시아조경학과		조 경 학 과	
	자동차공학과		자 동 차 공 학 과	
	제약·화학공학과		제약·화학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의학	수소에너지공학과	88명	수소에너지공학과	43명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예체능	한 의 학 과	88명	한 의 학 과	43명
	체 육 학 과		체 육 학 과	
예체능	-	88명	-	43명
	태 권 도 학 과		태 권 도 학 과	
	-		스 포 츠 과 학 과	
계	31개 학과	88명	26개 학과	43명

<주석 신설>

- 진천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인문사회	경영학과	10명	-	3명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	
공학	컴퓨터공학과		-	
	건설공학과		건설융합시스템학과	
예체능	스포츠융합학과	10명	스포츠융합학과	3명
	예술학과		-	
계	6개 학과	10명	2개 학과	3명

(문구삽입)

개 정(안)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인문 사회	교 육 학 과	95(20)명	교 육 학 과	45명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글로벌경영학과		-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학특성학과		교육학특성학과	
	심 리 학 과		심 리 학 과	
	-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과	
	사회경제·경영학과		사회경제·경영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		-	
	예술경영학과		-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관광문화경영학과		관광문화경영학과	
자연 과학	약 학 과	95(20)명	약 학 과	45명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 약 학 과		한 약 학 과	
	-		-	
	간호학(간호사)학과		-	
	간호학(간호사)학과		-	
공학	물리치료학과	95(20)명	-	45명
	전기전자공학과		-	
	동아시아조경학과		조 경 학 과	
	자동차공학과		자 동 차 공 학 과	
	제약·화학공학과		제약·화학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의학	수소에너지공학과	95(20)명	수소에너지공학과	45명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예체능	한 의 학 과	95(20)명	한 의 학 과	45명
	체 육 학 과		체 육 학 과	
예체능	-	95(20)명	-	45명
	태 권 도 학 과		태 권 도 학 과	
	-		스 포 츠 과 학 과	
계	31개 학과	95명	26개 학과	45명

※ () 안 인원은 가정전문간호사과정(10명),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10명) 정원

- 진천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인문사회	경영학과	13명	-	6명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	
공학	컴퓨터공학과		-	
	건설공학과		건설융합시스템학과	
예체능	스포츠융합학과	13명	스포츠융합학과	6명
	예술학과*		-	
계	6개 학과	13명	2개 학과	6명

※ *예술학과는 외국인전담학과임

현행			개정(안)		
2. 교육대학원 - 전주캠퍼스			2. 교육대학원 - 전주캠퍼스		
학과	전공	입학 정원	학과	전공	입학 정원
교육학과	특수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60명	교육학과	특수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45명
계	7개 전공	60명	계	7개 전공	45명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u><신설></u>			<u>부칙</u> 이 학칙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입안서

규정명	「AI혁신추진위원회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처/기획팀	관련 부서	AI혁신추진위원회
부서 간 협의 결과	• 위원장을 총장이 위촉하는 구조에서 총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체계로 전환하여, AI혁신 과제를 대학 최고 의사결정 차원에서 직접 총괄하도록 함		
법인이사회	• 해당 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 사항 없음		
입안 사유 (추진 배경)	• 상위 규정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당연직 위원 범위 축소 및 위원회 전문성 중심 구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다수의 보직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기존 20인 내외의 대규모 당연직 중심 구조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략적 논의에 한계가 있으며, AI 기반 대학혁신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기능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관련 근거 (관계 법령)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제1항 및 제5항 - ①위원회는 <u>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 ⑤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u>가급적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축소하고</u> , 타 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주요 내용 (제개정 내용)	• 위원회 구성 방식 개편 (제3조) - 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직접 수행 - 부위원장의 총장 지명 방식으로 정비 - 위원수를 13명 내외로 개편 (약간명으로 구성 및 당연직 위원 축소) • 보고체계 정비 (제9조) - 위원장이 총장이 됨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화		
기대효과	• <u>총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음으로써</u> AI혁신 과제가 대학 핵심 경영 아젠다로 격상 <u>주요 정책결정의 실행력 및 추진 동력 확보</u> • 20인 내외 대규모 구조에서 13명 내외의 슬림한 구조로 전환 <u>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u>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당연직 축소 원칙 반영 <u>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u>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AI혁신추진위원회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AI혁신추진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규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u>대의협력부총장, 진천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본부장, 교양대학장,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20인</u>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u>총장이 위촉하며</u>,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u>둘 수 있으며,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6.2.11.)</u> ④위촉직 위원은 <u>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u>,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하여 13명</u>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개정 2026.00.00.)</u> ②위원장은 <u>총장으로 하며</u>,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u>(개정 2026.00.00.)</u> ③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u>부위원장을 두며 총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6.2.11., 개정 2026.00.00.)</u> ④위원은 <u>총장이 위촉하며</u>,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u>(개정 2026.00.00.)</u>
제9조(보고) <u>위원장은</u>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u>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 경우 부위원장은</u>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개정 2026.00.00.)</u>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